

## 강원강릉경찰서

제 2023-01110 호

2023. 10. 10.

수신 : 이상훈(이도현 父) 귀하

제목 : 수사결과 통지서(피해자등·불송치)

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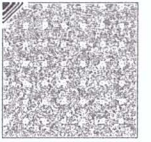
접수일시	2022. 12. 6.	사건번호	2022-005556
죄명	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 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)		
결정일	2023. 10. 10.		
결정종류	①불송치(공소권없음) ②불송치(혐의없음-증거불충분)		
이유	별지와 같음		
담당팀장	교통조사팀 경감 김인영	☎	033-650-9654

## ※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

-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(범죄피해자보호법)
  - 관할지방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
-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(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)
  -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
-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(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)
  - 각급법원에 신청,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
  - 여성 긴급전화(국번없이 1366), 아동보호 전문기관(1577-1391) 등
- 뺑소니·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)
  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1544-0049)에 청구 가능
-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
  -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,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
-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(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·출장소)
  -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(손해배상청구,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)
-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국번없이 1577-1295)
  - 피해자나 가족,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
-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
  - 국민신문고 [www.epeople.go.kr](http://www.epeople.go.kr),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
-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
  - [www.humanrights.go.kr](http://www.humanrights.go.kr), 국번없이 1331

강원강릉경찰서장





**【별지】**

**【결정종류】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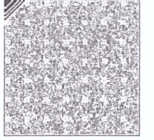
- ① 불송치(공소권없음)
- ② 불송치(혐의없음-증거불충분)

**【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】**

- ① 2022. 12. 6. 15:50경 강릉시 회산로 373 이디아커피 앞 교통사고,
  - 피의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안이라 불송치(공소권없음) 결정함.
- ② 2022. 12. 6. 15:50경 강릉시 경강로 1843앞 기분좋은주유소 옆 교통사고
  - 피의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 이상을 유발한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만 위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하여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,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,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위 분석 결과를 피의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(혐의없음) 결정함.



202310102002002310003005



### ※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·심의신청 방법

#### <결정 종류 안내>

-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-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.
-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-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,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·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.

#### <이의·심의신청 방법>

-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(고발인은 제외)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.
- 수사 심의신청 제도(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)  
-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관할 시·도 경찰청 「수사심의계」에 심의신청

202310102002002310004005